

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

(주)씨버드넷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불통화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보신 분은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0년 1월 29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1. 신고대상 : (주)씨버드넷이 발행한 선불통화권 이용 피해자
2. 신고기한 : 2010. 3. 14.까지
3. 제출서류(자료)
 - 가. 이용자피해신고서 : 붙임 참조
 - 나. 선불통화권 실물(카드, 사용권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)
 - 다. 선불통화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
 - ※ 공급계약서,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, 입금확인증 등
 - 라. 피해보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(본인 명의)
4. 유의사항 : 제출서류등 피해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· 제출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,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신고방법 : 우편 또는 직접 방문
6. 신고처 : ☎152-110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-34
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
7. 보상계획
 - 가. 보상예정일 : 2010. 6월예정
 - 나. 보상금 산정방법
 - 신고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
 -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
 - 다. 보상의 방법 :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
8.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(☎(02)2680-17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